

국민연금나눔재단 지원사업 잔액 반납 및 환수 절차

〈2022.11.1.〉

< 배분금 반납 대상 >

1) 배분사업 종료 후 배분금(이자 발생분* 포함)의 잔액

- 사업 종료일과 잔액 반납일 사이에 발생한 이자는 반납을 원칙으로 함.

※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배분금(인건비 제외)에 포함하여 사용하고 사업종료 후 미사용 잔액은 반납

2) 국민연금나눔재단(이하 “재단”)이 특정 사유로 기관에 배분금 반납 요청한 경우 해당 금액

< 반납 예외의 경우 >

1) 사업종료일 현재 잔액이 0원이거나, 잔액을 전액 반납한 후에 사업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추가로 반납하지 않고 기관의 잡수입으로 처리함.

2) 잔액 총액이 2,000원 미만인 경우 반납하지 않고 기관의 잡수입으로 처리함.

- 2차 또는 3차 배분지원기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, 잔액 총액이 2천원 이상인 경우 전액을 재단에 반납 처리해야 함.

(2차, 3차 배분지원기관이라함은 재단으로부터 사업수행을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수행기관을 말함.)

< 반납 및 환수 절차 >

1) 반납계좌

- 우리은행 / 1005-704-352926 / 재단법인 국민연금 나눔재단

2) 반납 관련 사업명, 반납금액, 반납일시, 반납계좌를 명시한 공문서 제출

3) 유의사항 : 반납 시 반드시 기관명으로 입금

4) 사업·예산 평가결과 재단의 환수요청이 있을 시 공문수령 후 1개월 이내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함.

5) 사업비 환수 및 지원중단의 경우 배분사업으로 구입한 비품(장비 등)은 사안별로 재단이 반납 여부를 결정함.